

진정조사

조사결과 처분요구서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

2016. 12.

문화재청

목 차

I. 조사실시 개요	1
1. 조사목적	1
2. 조사대상기관	1
3. 조사중점	1
4. 조사기간 및 인원	1
II. 조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1
1.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채용전반에 관한 사항 (기관경고)	2
2.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일본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 (징계요구)	7
3.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일본 내 개인소장 문화재 조사에 관한 관한 사항 (징계요구)	11
 [별첨 1] 2014년 이후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직원 채용 공고 중 자격요건 현황	13
 [별첨 2] 2014년 이후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직원 채용 심사위원	14

I. 조사실시 개요

1. 조사목적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 사무소 운영 등에 대한 진정을 접수함에 따라 진정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및 재단 운영의 효율성 제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대상기관

이번 조사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과 그 소속부서인 ○○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 조사중점

진정 내용에 포함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채용 전반에 관한 사항 및 ○○사무소 운영 사항과 2016년 4월 실시된 ○○ 내 개인 소장 문화재에 대한 조사 등에 대하여 중점 조사를 실시하였다.

4. 조사기간 및 인원

2016. 9. 7.부터 같은 해 11. 2.까지 6일간 조사인력 2명이 조사를 실시하였고, 문화재청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6. 12. 26. 조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조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 별첨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기 관 경 고

제 목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채용전반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내 용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국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재와 관련된 제반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12년 7월에 설립되어, 현재 경영지원실, 국제협력실, 조사활용실 및 일본·미국 사무소 등 3개실 2개 해외사무소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8.8월까지 연구직 4급 등 총 7회에 걸쳐 직원을 공개 채용하였다.

가. 수습기간 운영 관련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인사규정 제7조(수습)는 직원을 신규 임용할 때에는 당해 업무 분야에 최소 6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특별한 경우에 따라서 수습기간은 생략,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수습기간 운영 시 규정에 따라 최소 6개월의 수습기간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원 임용 등을 결정하여야 하나, '12년 이후 채용한 19명 중 6명 대하여는 채용 후 6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규직원으로 임용하였으며, '15.1.1. 채용한 3명 중 2명은 9개월의 수습기간을 두었고, '15.3.1. 채용한 특정인의 경우 조사 시점('16.11.)까지 수습상태로 있는 등 총 9명(47%)에 대하여 수습기간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였고, 채용 공고 시 '수습기간 경과 후 평가결과에 따라 정규 직원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하였음에도 정규직원 임용 및 수습기간 연장 시 별도의 평가를 거치지 않았다.

구 분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직원 채용 후 수습기간('16년 11월 현재)				
수습기간	미적용	6개월 미만	6개월	9개월	20개월
인원수 (총 19명)	2명 (‘12년 채용자)	4명	10명	2명	1명 (현재 수습중)

※ 한국문화재재단의 경우 「수습직원 평가지침」을 마련 수습기간 6개월 중 2회의 내부평가를 실시한 후 본 채용 여부 결정

나. 특별채용 운영 관련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인사규정 제6조(채용방법) 제1항은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거나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 직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전형으로 채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16.6.28. 국제협력실 부서장(실장)을 임용하는 것을 사유로 3급 특별전형 채용 계획을 수립한 후 당시 재단 4급 직원 4명(2명 수습직원 포함)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쳐 수습직원인 □□□을 특별전용으로 3급에 채용(‘16.7.1.)하였다.

그러나, 자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이며 특별채용자가 해당 직급(3급)의 임용기준에 적합하다 할지라도, 공개경쟁 채용으로 진행함이 부적정하다 판단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실장은 2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보하도록 한 자체 직제규정을 감안할 때 상기의 특별채용이 바람직하였다 판단하기 어려우며, 타 기관의 경우 사례와 비교할 때 특별전형 채용이 보다 엄격히 운영될 필요가 있다.

※ 한국문화재재단의 경우 특별전형 채용은 재직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만 한정 운영됨

다. 채용 공고 시 자격 조건 및 심사 기준 관련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인사규정」 제8조(임용자격의 기준) 제1항은 직원의 직종·직급별 임용자격기준은 [별표 2]의 경력, 학력, 전문성, 업무역량 등을 고려하여 직제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14년 이후 총 8회에 걸쳐 연구직 2급 등 총 8개 분야 15건의 채용공고를 하였다.

그러나, 2016.1.28. 채용 공고한 4급(팀장, 국외소재 문화재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의 경우 해당 업무의 특성 상 외국어 구사 능력이 요구되나, 직전 동일 직급 채용 공고(2015.11.16.) 및 이전 연구직 직종 채용 공고와 달리 어학능력을 자격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 등 동일 직급에 대한 개별 공고 시마다 상이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였으며, 7건의 경우 자체 「인사규정」 「직종·직급별 임용자격 기준」과 상이하게 공고하였다.(별첨1 참조)

또한 채용 공고 전 해당 채용 건의 심사항목·항목별 배점·배점기준 등을 정함이 타당하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채용 공고에 따른 원서접수가 이루어진 후 해당 채용 건의 심사항목·항목별 배점·배점기준 등을 정하여 시행하였으며, 2016.1.28. 채용 공고한 4급(팀장, 국외소재 문화재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의 심사항목에 대한 배점 및 배점 기준을 직전 동일 직급 채용 공고(2015.11.16.)와 상이하게 적용하는 등 동일 직렬·직급 채용의 경우에도 채용 시기별로 심사항목별 배점·배점기준 등이 상이하게 정하여 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라. 채용 심사 시 심사위원 선정 관련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14년 이후 총 7회에 걸쳐 채용공고한 후 응시자들에 대하여 서류심사·면접심사 및 외국어 능력검증 등을 실시하였고, 심사를 위하여 통상 외부 위원 2명을 위촉한 후 총 3명(사무총장, 외부위원 2명)이 심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심사자의 선정 시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류 및 면접심사 각각의 심사위원을 달리함이 타당하나 '14년 이후 모든 채용 심사 시 서류 심사에 참여한 심사자가 면접심사에 참여하였고, 특히 외부 특정인의 경우 7회 중 6회의 채용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채용 심사에 대한 공정성 확보 노력이 미흡하였다.(별첨2 참조)

* 한국문화재재단의 경우 서류심사는 내부직원(실장급 3명)으로, 면접심사는 통상 내부직원 1명(임원급) 및 외부 2명으로 실시하고, 특정한 직렬에 대하여는 심사 위원의 수가 증가되며 이 경우에도 외부위원 과반수의 원칙을 유지. 외부심사위원의 경우 매회 변경하여 위촉함

마. 채용 전 채용 응시자 개별 면담 관련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채용 응시자와의 접촉 시 채용의 공정성 고려하여 사적 접촉을 자제하여야 함에도, '14.10.20.경 △△△ 사무총장은 면접 대상자("14.9.26. 채용 공고 건)와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위치한 에이스타워 1층 휴게소에서 개별적 만남을 갖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

바. 임용권자 지정 규정 관련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자체 「인사규정」 제5조(임용의 원칙)는 직원 임용에 대한 권한이 이사장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임전결규정」 제2조(적용범위)는 위임 및 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임용에 관한 권한은 「인사규정」에 따라 이사장에게 그 권한이 있으나, 「위임전결규정」은 사무총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용권자에 대한 자체 규정 간 충돌이 있으므로, 이사장이 비상근인 점 및 사무총장이 현재까지 임용 권한을 실제적으로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에 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관련자

소속	직·성명	담당기간	담당업무	현근무처	비고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사무총장 △△△	'14.5.1~'16.10.14	임용권자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사무소	'마관련'

조치할 사항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사무총장은 앞으로

- ① 채용 과정 중 임용자격 요건을 인사규정과 상이하게 공고하는 등 채용 업무를 미흡하게 처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채용 과정 중 응모자와 부적절한 면담을 실시한 관련자에 대하여는 경고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③ 또한,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도 관련 규정 정비 및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권자에 관한 사항, 수습직원 평가지침, 특별전형 채용 세부지침, 채용 응시자 직종 · 직급별 심사항목(어학능력 포함) 등 인사 관련 제 규정을 마련 · 정비
- 특별전형 채용은 외부전문인력 및 계약직 등으로 한정하는 등 특별승진 및 특별전형 채용을 엄격히 제한하여 운영
- 마련된 수습직원 평가지침에 따라 수습기간 중인 직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정규직 채용여부를 결정
- 일반 규정들의 제 · 개정 및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특별전형 채용 및 특별승진 시에도 감독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처리
- 인사 · 복무 및 자체 감사 업무 강화를 위해 장기 공석중인 경영지원실장 (2급이상)을 조속히 채용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징계요구

제 목 ○○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내 용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해외사무소운영규정」 및 「직제규정」에 따라 ○○지역 소재 우리문화재의 조사·환수·활용·홍보를 위해 ○○사무소를 2013년 10월 개설하여, 2016년 11월 현재 5급(수습)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다.

가. 계약직(현지직원) 주택수당 지급 관련

국외소재문화재재단 「해외사무소운영규정」 제5장 제25조(주택수당)는 파견직원에게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기간에 대하여 주택수당을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파견일부터 2개월 경과시점부터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지 채용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주택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를 2014.2.1.~2014.10.31. ○○사무소 현지직원으로 채용한 후, 2014.11.1.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사무소에 근무하게 하였다.

그러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현지채용 직원에게는 주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현지직원인 ▽▽▽와 계약을 채용하며 1차 채용계약서(2014.2.1.~2014.6.30.)에 급여 외에 별도의 주택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한 후 2014.4월~2014.6월까지 매월 130,000₩을 지급하였고, 2014.7.1.~2014.8.31. 및 2014.9.1.~2014.12.31. 기간으로 2회 채용계약을 연장할 때는 주택수당 지급을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2014.7월부터 2014.10월까지 매월 동일한 금액의 주택수당을 지급하여 총 910,000₩의 주택수당을 ▽▽▽에게 부적절하게 지급하였다.

계약기간	주택수당 지급기간	계약서상 주택수당 지급 명시	지급액
'14.2~'14.6	'14.4~'14.6	별도지급 명시	390,000¥
'14.7.~'14.8	'14.7~'14.8	명시되어 있지 않음	260,000¥
'14.9~'14.12	'14.9~'14.10	명시되어 있지 않음	260,000¥
합 계	'14.4~'14.10(7월)		910,000¥

나. 업무 인계 후 일본 출장 관련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사무소에 근무하던 △△△에 대하여 2015.4.1. 본부에서 근무하도록 하였고, 후임자로 ◎◎◎를 인사발령하여 ○○사무소를 운영하게 하였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상기와 같이 ○○사무소를 운영하며 연간 운영 비용이 1인당 7,600만원(인건비 4,700만원, 주택수당 2,900만원) 소요됨을 감안하면 기존 업무에 대한 철저한 인수인계 및 해당 업무에 적정한 자를 파견하는 등 ○○사무소 업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 별도의 일본 출장을 자제함이 타당하나 기존 수행 업무 진행 및 ◎◎◎에 대한 업무 지원 등을 사유로 2015.4.1. 이후 총 11회 47일('15년 8회 39일, '16년 3회 8일)에 걸쳐 △△△를 일본으로 출장하게 하였다.

다. 해외사무소 운영 관련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해외사무소운영규정」을 통해 해외사무소의 업무를 '현지 한국문화재의 조사·활용·홍보·환수 전초기지 역할 수행 등 7가지로 정의하였으며, 2013.10월 사무소 개설 이후 2014.2월부터 2014.10월까지 1명의 현지직원을 근무하게 하였고, 2014.11월 이후 현재까지 5급 직원 1명을 파견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자체 여건에 따라 4급 이상의 소장을 파견한 실적은 없다.

해외사무소의 주된 업무가 '현지문화재의 소재, 현황 파악 및 정보 수집 등 조사 및 연구적인 업무와 이에 대한 활용·홍보·환수 및 현지 관련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등 행정적인 업무가 공존하고 있어 연구인력과 행정인력을 동시에 파견하면 해외사무소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국외소재문화재

재단의 현 규모·인력·예산 등을 고려할 때 2인 이상의 파견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업무 중 현 단계에서 필요한 적임자를 파견한 후 추후에는 타 업무 전문가를 파견하여 상호 보완하게 함이 타당하며, 현재 해외사무소 직원의 복무기간은 3년으로 하며 경영상 필요한 경우 및 성과평과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균형적인 업무 수행과 인수·인계 등을 고려하여 1인의 해외사무소 최대 복무기간을 제한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사 및 환수 등 업무 수행 시 수행 직원의 직급보다는 업무의 숙련도 및 전문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단체와의 교류협력 등 필요 시 대외직명 등을 사용하게 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 한국문화재재단의 경우 '실무직원 대외 직명 운영지침'을 마련 주임연구원, 선임연구원 및 주임, 대리 등의 직명을 대외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관련자

소속	직·성명	담당기간	담당업무	현근무처	비고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실	4급 ★★★★	'12.11.5.~현재	지출업무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실	'가 관련
국외소재문화재재단 ●●●● 실	5급 ①①①	'12.8.1.~현재	지출업무	국외소재문화재재단 ●●●● 실	'가 관련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실	4급 ①①①	'12.12.20.~현재	조사연구 (채용계약)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실	'가 관련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실	5급 ▼▼▼	'13.7.2.~현재	조사연구 (채용계약)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실	'가 관련

조치할 사항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사무총장은

- ① 주택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현지 채용자와 채용계약을 하며 주택수당 지급을 명시하여 채용 계약을 부적절하게 한 자(①①①, ▼▼▼)와 주택 수당을 부적절하게 지급하도록 한 자(★★★, ①①①)에 대해 자체 「인사규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라며,
- ② 계약서 상 지급이 명시하지 되지 않은 주택 수당을 지급받은 관련자에게는 잘못 지급된 주택수당 520,000₩을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 ③ 또한,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도 관련 규정 정비 및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사무소의 균형적인 업무 수행 및 인수·인계 등을 고려하여 1인의 최대 복무기간 설정
 - 해외사무소 운영 시 예산 절약 등을 고려하여 주택 수당 등 실비용의 정산 실시 검토
 - '실무직원 대외 직명 운영지침' 등을 마련 원활한 업무 수행 유도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징계요구

제 목 ○○ 내 개인소장 문화재 조사에 관한 관한 사항

관계기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내 용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조사활용실 □□□은 '○○ 개인 소장 한국문화재 조사'를 위해 2016.4.5.~2016.4.6. 기간 중 □□□으로 출장하였고, ○○○는 ○○○에서 조사에 동참하였으며 한국문화재 ○○○ 소장자의 대리인인 최○○ 등과 만나 금동불입상 2점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관련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16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1항에 따라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등을 제외한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 및 ○○○는 최○○으로부터 점심식사(1인 7천원 라면), 저녁식사(1인 3~7만원 ○○○ 정식, 저녁식사 시 일인당 1~10잔 정도의 ○○○ 술을 함께 제공), 식사 후 최○○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일본 식 클럽에서 여자들이 동석한 가운데 안주, 양주 또는 차 1잔, 일본 과자 선물 1박스(2만원 상당)를 제공받는 등 직무관련자인 최○○으로부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를 초과한 향응을 제공받아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

나. ○○ 내 개인소장 문화재 조사 관련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 개인 소장 한국문화재 조사'를 위해 상기와 같이 □□□ 및 ○○○ 및 외부전문가 1인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조사하게 하였다.

그러나 국외 소재 문화재 조사의 경우 조사 경험이 풍부한 기존 직원이 참여하여 해외소재문화재 자료 조사 시 요구되는 절차·방법 등에 따라 면밀히 해당 조사를 실시함이 바람직하였으나 김상엽 및 김인규는 채용 후 수습기간 중이었던 자료 조사자 구성이 바람직하지 못하였다.

또한, 조사자는 해당 업무 매뉴얼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관련 업무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향후 상기와 같은 개인 소장가의 요청에 따라 조사 및 감정이 이루어질 경우 문화재의 소재 등은 파악될 수 있으나, 소장자가 문화재 전문가 감정내용을 해당 문화재의 가격 책정 등에 악용할 가능성도 있어, 추후 환수 추진 시 가격 상승 등의 사유로 환수가 곤란할 가능성 또한 존재하여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관련자

소속	직·성명	담당기간	담당업무	현근무처	비고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실	4급 □□□	'16.3.16.~'16.6.30	□□□□팀 총괄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실	'가' 관련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사무소	5급 ○○○	'15.3.1.~현재	○○사무소운영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사무소	'가' 관련

조치할 사항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사무총장은

- ① 직무관련자로부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초과한 향응을 제공받아 「국외 소재문화재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동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하시고, 신고자에 대하여는 동 규정 제25조의2 제3항을 감안하여 조치하시기 바라며,
- ② 국외 소재 문화재의 조사에 대한 '사전 조사계획서 작성 및 조사 방법' 등이 포함된 상세 업무메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2014년 이후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직원 채용 공고 중 자격요건 현황

공고일자	임용예정 분야	자격요건			비고
		학력	경력	어학	
2014.9.26	연구직 2급	관련 석사이상	10년이상 문화재관련 분야 근무	TOEIC 850점 이상 등	기준 미달
	연구직 6급	관련 학사이상	-	TOEIC 850점 이상 등	-
	5급(일반사무소)	학사이상	일본현지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JPT 850점 이상	기준 상이
	6급(회계담당)	학사이상	회계업무경력 3년	-	기준 과다
2014.11.24 (2014.11.26)	연구직 5급	관련 석사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JPT 850점 이상	기준 과다
	6급(회계담당)	학사이상	회계업무경력 1년	-	-
2015.8.5	5급(회계담당)	학사이상	회계업무경력 3년	-	-
	6급(경영지원)	학사이상	경영지원업무경력 1년	-	-
	6급(사업)	학사이상	-	TOEIC 850점 이상 등	-
2015.11.16	2급(실장)	관련 석사이상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	-	기준 미달
	4급(팀장,국외한국문화재관련업무)	관련 학사이상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	TOEIC 850점 이상 등	기준 미달
	6급(경영지원)	-	-	-	기준 미달
2016.1.28	4급(팀장, 국외소재 문화재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관련 박사학위 소지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어학자격 미요구
2016.3.2	5급(사업)	관련 석사학위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TOEIC 850점 이상 등	-
2016.8.24	6급(경영지원)	-	경영지원업무경력 1년	-	기준 미달
총 7회	15개	총 9개 채용분야에 걸쳐 자체 규정(임용기준) 미준수 등			

[별첨 2] 2014년 이후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직원 채용 심사위원

구분	서류심사위원	면접심사위원	외국어심사위원
2014년도 1차 직원 공개채용		(회계담당 지원자에 대해서만 면접실시)	
2014년도 2차 직원 공개채용			
2015년도 1차 직원 공개채용			
2015년도 2차 직원 공개채용			
2016년도 1차 직원 공개채용			
2016년도2차 직원 공개채용			
2016년도3차 직원 공개채용			